

기술지도 계약체결에 있어 공사기간 적용



공사계약만 체결하고 미착공상태에 있던 원도급자의 부도로 인해 연대보증인이 발주처의 보증시공 지시를 받아 공사계약서 준공기일대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6-6호)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도급인의 계약서상 착공일로부터 계산하여 계약서상의 준공기일까지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대보증인이 실질적으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계약서상 준공기일까지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6호, '95. 2. 23)제12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기간은 계약서상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부도나 설계변경,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공사 주체 또는 권리·의무관리의 변동 등이 발생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는 공사 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이나 민법 등 계약관련 법령 등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 96-6호는 제99-11호로 개정됨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의해 표준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명칭 변경

리프트용 무선호출기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지콜”이라는 리프트용 무선호출 시스템을 건설현장의 인화물용 리프트에 부착하여 활용할 경우 이를 안전관리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건설현장의 인화물용 리프트에 대해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권과방지장치 및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리프트용 무선호출 시스템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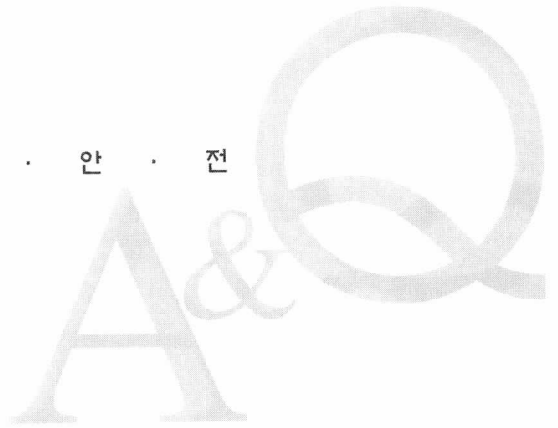
토류벽 보강 L형강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개착구간 흙막이 복공에서 토류판을 설치 후 토압 과다로 토류벽이 변형되어 안전시공을 위해 토류벽에 보강한 L형강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토류벽 보강 L형강 설치비는 당초 설계당시에 토압에 따른 토류벽의 설계 착오 등으로 시설물(토류벽)의 보강을 위한 L형강 보강 설치비는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내역에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음.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를 감액 정산할 수 있는지



토목공사(공사기간 : '90. 12. ~ '95. 5.)에 연계하여 건축, 설비, 전기, 통신공사를 추가 수주(공사기간 : '94. 7. ~ '95. 8.)하였을 때 발주처에서 별도의 공사로 안전관리비를 계상(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산정기준)하였으므로, 후속 발주된 건축, 설비, 전기, 통신공사의 안전관리비 중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 정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발주자가 계상토록 하고 있는 표준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계약 체결시 그 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비록 사업주가 추가 수주된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증원함이 없이 겸직시킴이 가능하더라도 발주자는 그 추가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를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계상

하여야 한다.

한편, 발주자는 공사진행중에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공사 종료후 그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법 목적에 맞게 충분히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94. 10. 20 이전에 발주된 공사라면)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정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고

관련 고시 개정으로 '94. 10. 21 이후에 발주된 공사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감액토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9-11호) 참조]

채용신체검사를 채용시 건강진단으로의 인정 여부



채용시 건강진단을 피용자 비용부담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채용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주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면 사업체의 규정에 따라 최종합격자에 대한 입사구비서류로 채용신체검사서를 청구할시 피용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한 신체검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채용시 건강진단이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그 리고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 그 검사항목은 동법시행규칙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 채용구비서류의 하나로서 “채용신체검사서”의 제출로 채용시 건강진단을 갈음코자 할 경우에는 법상의 “채용시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한 것이어야 하며,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주체는 사업주인 것이므로 건강진단비용은 피용자 부담으로 하여서는 아니됨.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채용시 건강진단기관은 없음.

소음이 몇 dB이하일 때 작업부서로 이동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소음성난청자로 판정 받은 작업자의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시 소음 측정결과가 90dB(A)이하일 때(8시간 기준)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을 해주어야 되는지 여부 및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전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면 몇 dB(A) 이하인 작업부서로 이동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소음성난청자로 판정 받은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전환을 도저히 할 수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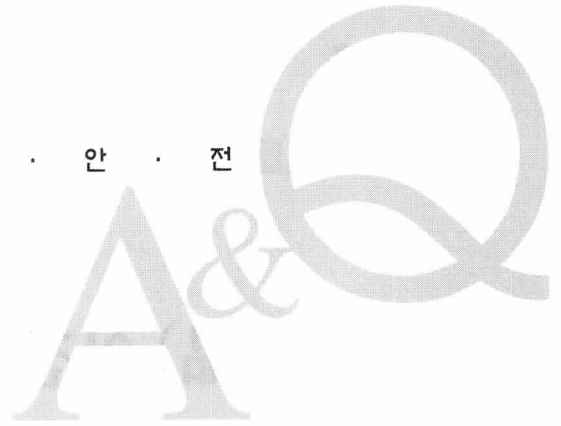
상황 발생시 해고를 시킬 수 있는지 여부

- 해고를 시킬 수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해고를 시킬 수 없다면 그 사유는
- 당사자가 사직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고 조치를 한다면 정당 해고가 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병(소음성난청유소견자 포함)에 대한 사후관리는 검진 의사의 사후관리 소견에 따라야 하며, 소음측정결과 90dB(A)이 하인 경우 반드시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전환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검진 의사, 해당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의 소견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 착용으로 청력보호가 가능할 경우 그 소견에 따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고, 검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전환이 필요한 경우의 변경부서는 당해 사업장의 소음수준, 사업장 작업공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장 산업보건의 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객관적으로 청력의 저하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부서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일률적으로 그 변경부서의 소음수준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2)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소음성난청으로 판정되어 작업전환 등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동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며, 해고 회피노력, 해고절차 등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작업전환, 작업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근거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련조항 변경으로 조문번호 수정

수입하는 소포장 용기의 경고표지 부착방법



소량 포장하여 수입하는 물건의 경우 소포장을 다시 여러개로 포장한 파렛트 단위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게 하고, 원자재 창고로 이송한 후 적재된 파렛트 앞 해당 경고표지 문구를 팻말로 표시하는 것은 어떤지 ?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에서 경고표지 부착의 제정 취지는 화학 물질 취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경고표지는 대상화학물질을 직접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각각 부착하여야 함.

- “용기”라 함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하나 제제를 직접 담은 합성강제, 플라스틱, 유리 등으로 된 것을 말한다.

- “포장”이라 함은 분말, 입자 등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비닐포대, 중

이포대 등을 말한다.

다만, 국제선박운송규정 IMDG(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에 의한 경고표지와 국제항공운송규정의 DGR(Dangerous Goods Regulation)에 의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98. 1. 1부터는 최초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동법 제41조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간주함.

GANTRY크레인 등의 해당 작업



다음 장비의 조종업무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어느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적용여부는 아래 표와 같다.

번호	장 비 명	[별표1] 적용번호	비 고
1	Gantry Crane(G/C)	13	컨테이너크레인에 해당
2	Transtainer(T/T)	13	컨테이너크레인에 해당
3	Transfer Crane(T/C)	13	컨테이너크레인에 해당
4	Straddle Carrier(S/R)	미적용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의 특수자동차에 해당
5	Yard Tractor(Y/T)	미적용	"
6	Yard Forklift(Y/F)	4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중 지게차에 해당
7	CFS Forklift(W/L)	4	"

